

“안전한 식품 의약품 사용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남식의약품안전네트워크협의회(이하 “경남식의약품협의회”라 한다)와 해드림 재가복지센터, 양산시니어클럽, 내외동주간보호센터는 식품 및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 식품의약품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홍보·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남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식품 및 의약품 사용과 더불어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 참여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협약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3조(협약내용 및 역할) 각 기관은 제1조 본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한다.

- ① 경남도민을 위한 식품 의약품 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한다.
- ② 각 기관은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에 필요한 교육홍보, 인원모집 등에 적극 협조한다.
- ③ 식품 의약품 안전 네트워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절차 등은 기관 실무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참여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협약의 이행 등)

- ① 협약 참여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참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6조(구속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써, 본 협약 시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7조(효력발생과 갱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초 1년간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 참여기관은 종료 3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협약을 갱신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날로부터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 통지에 의해 협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9조(보관) 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협약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10일



한국부인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경상남도 식의약협의회 대표 곽윤주 (인)



해드림 재가복지센터 대표 이순자 (인)



양산 시니어클럽 관장 박신일 (인)



내외동 주간보호센터 대표 김 건 (인)